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573-16, 강북구, 수유-4-동, B 동 201 호, 서울시
	성 명: Kim Stoker 김 스토키
건 명	해외입양 중단에 관한 건
소개년월일	2007.4.25
<p>소개의견</p> <p>21 세기에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해외입양의 문제입니다.</p> <p>오늘날, 한국은 산업국가 중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자국민을 해외로 떠나보내는 나라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3 년부터 2004 년까지 155,044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 103,095 명, 프랑스 11,090 명, 스웨덴 8,953 명, 덴마크 8,571 명, 노르웨이 6,080 명, 네덜란드 4,099 명, 벨기에 3,697 명, 호주 3,147 명, 독일 2,352 명, 캐나다 1,841 명, 스위스 1,111 명, 뉴질랜드 559 명, 룩셈부르크 492 명, 이탈리아 382 명, 영국 72 명입니다.</p> <p>이렇게 한국 아이들을 서구 사회로 보내 한국인이 아닌 부모 밑에서 자라도록 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세계 경제 수준이 11 위인 한국이 아직도 가난하며 개발도상국이어서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돌볼 능력조차 없다는 인식을 강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와 같은 국가들이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GDP 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더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실 고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도 약 2,000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10 대 후반에서 20 대 중반 사이의 미혼모가 낳은 경우가 많습니다.</p> <p>이런 현상은 한국의 세계적 지위에 전혀 걸맞지 않을뿐더러, 사상 초유의 출산율 저하가 큰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입양이 계속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어린이와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복지사회 건설 노력 대신 손쉽게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p>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는, 국내에서 아동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본 후 더 이상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해외로 입양 보내야 하며, 이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현재 해외입양을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입양은 또한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으로 입양되는 한국 어린이의 미래도 문제일뿐더러, 충분한 정보와 비강압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생모의 권리도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들을 낳은 어머니 모두를 위하여 경제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을 질 때가 왔습니다. 해외 입양을 중단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더 이상 해외입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청원인(이름?)의 청원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장 향 숙 인

청 원 서

해외입양 중단에 관한 청원

2007. 4. 25

주 소:

전 화:

성 명: (인)

더 이상의 해외입양을 중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_____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로 입양되어 어느 나라에서 지냈으며, 언제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몇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간략한 본인소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더 이상의 해외입양을 중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I.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A. 한국 아동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부족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없다면, 저소득 가정이나 독신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1993 년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통해 세계에서 승인된 아동 보호의 수준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는 현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01-2005 년 해외입양된 아이들의 99.7%가 고아들이 아니라, 미혼모가 낳은 아이입니다. 만일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스스로 기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라고는 출산 직후 단기간에 한할 뿐이며, 그 지원 액수 또한 미미합니다.

B.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아동복지는 현재 사회복지에서 가장 발달이 더딘 분야입니다. 기획예산처가 2006 년 아동교육과 보호에 대한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 보호'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보건 복지 전체 예산의 1.6%에 불과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C. 유엔아동권리협약 : 해외입양은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가장 처음 고려하는 대안이어서는 안 되고,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유엔은 자기 나라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각국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외입양은

오로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을 수 없거나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서의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사회 복지 및 가족계획의 부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최후의 선택”이 아닌 “최초의 선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II. 해외입양이 몇몇 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A. 해외입양기관과 고아원의 수익 및 잘못된 운영

“고아원, 대규모 아동보호시설은 한국의 가장 큰 허점이다. 국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고, 대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이를 담당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사회복지단체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는 데 있다. 설립 당시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들 단체는 점점 사유화되고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간에 운영할 권리를 이전. 상속하고, 영리 사업에 손을 대며,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며, 감독기관과 결탁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출처: 유엔아동권리협약 첨부 한국의 아동권리보호 협약 이행 실태에 대한 제 2 차 보고서, 2002 년 6 월)

해외입양사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확고한 사업입니다. KBS 에서 방영한 ‘추적 60 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2003 년 한해 동안 한국의 4 대 해외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벌어들인 해외입양 중개 수수료는 모두 18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절약하고 미혼모와 원치 않는 아이들의 문제를 회피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정부는 수익을 창출하는 입양 산업 형성에 과도한 국가재정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국제사범에 대한 헤이그 조약,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1993 년 5 월 29 일 체결, 1995 년 5 월 1 일 시행) 제 4 장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외입양과 관련된 활동으로 부당한 재정적 혹은 기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단지 입양과정에 참가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도의 수수료를 포함하는 비용만이 부과 및 지불되어야 한다.

B. 국내입양 수수료보다 현저히 높은 해외입양 수수료

국내입양과정에서 지불되는 수수료와 해외입양과정에서 지불되는 수수료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고경화위원이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내입양 수수료는 평균 219만 8천원이었던 데에 비하여 해외입양 수수료는 961만 6천원이었습니다. 해외입양수수료 중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며(절차비용), 이중으로 징수되기도 하고(정부 및 아이를 입양해가는 가족 모두가 해외입양기관에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불하도록 함), 징수할 필요가 없는 돈도 있었습니다(홍보자금은 정부가 지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해가는 부모에게 넘김). 사실상, “이렇게 큰 수수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입양이 장려되고 국내입양이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C. 미혼모 시설과 입양기관 간의 관계

한국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은 대부분 입양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미혼모들이 의존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혼모가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양기관, 고아원, 미혼모 시설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고, 관리감독 및 회계 감사를 소홀히 했기에 때로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강압이나 뇌물이 연관되는- 입양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18개의 “미혼모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잠자리와 숙식, 의료 혜택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이 해외입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치 못한 재정지원입니다. 정부는 2003년 미혼모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결정하였으나 이 지원액은 미혼모들이 겪는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혼모 보호시설은 종종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미혼모 보호 시설 및 입양기관과 밀착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2005년 봄 KBS 추적 60분에서 이미 방영된 바 있습니다.

Ⅲ. 해외입양은 입양인 및 친가족의 인권 침해입니다.

A. 유엔아동권리협약 : 해외입양은 해외입양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이 불법적인 개입 없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8 조 제 1 항)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분명히 “모든 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또 부모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런 도움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정이 아이를 보호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입양인의 출생국으로부터의 비자발적인 이탈/제거

입양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보통 입양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려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입양인이 갖는 권리는 쉽게 과소평가되고 무시되거나 잊혀집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8 조는 정체성에 대해 정의하면서 “불법적인 개입 없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가 이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20 조 제 3 항은 대안적 보호가 결정되는 경우 “아이의 성장 환경 및 아이의 인종, 종교, 문화, 언어 등 배경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정당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한 개인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개인의 역사에 관한 권리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출생국과 입양된 국가 사이의 엄청난 문화 차이는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과거사 및 삶 초기 역사를 되찾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국 언어와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2. 정체성, 문화, 언어, 전통의 상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2 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 노력, 국제사회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국가에 존재하는 각종 조직과 자원의 지원을 받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외입양에 대해 아동에 대한 최선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최종적인 임무이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권리는 “그 출생뿐만 아니라 (이름, 국적,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정체성 및 불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까지”를 의미하며,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제 8 조). 또한 아동은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에게 양육될 기본권이 있으며, “가능한 한 알 권리와 부모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 7 조) 그리고 대안적 보호가 불가피할 경우,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연속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 및 언어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 20.3 조)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입양 관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런 아동 권리 보호의 기준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량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 해외입양은 친모/친가족의 인권 침해

1. 아동 포기에 대한 친모/친가족 강압 및 기만

많은 경우, 미혼모 보호시설과 해외입양기관 사이의 연계 때문에 미혼모들은 아이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정당치 않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미리 고지 받지 못하며, 종종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재정적 압박을 당합니다.

한편, 국제사법에 대한 헤이그 조약,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협약(1993년 5월 29일 체결, 1995년 5월 1일 시행) 제 4조 C(3-4), D(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해외 입양은 아동이 태어난 국가의 관할 당국이 (c) 다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허용된다. (3) 금전적인 보상이나 다른 어떠한 종류의 보상과도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가 내려졌으며 또한 그 후에 철회되지 아니하였고, (4)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후에만 가능하여야 하며; (d) 아이의 성숙도와 나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4) 이 고려에 대한 동의가 금전적인 보상 또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보상과 결부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양육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재정 지원 및 사회복지의 미비

한국에서 미혼모가 취할 수 있는 선택과 권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들이 아이를 돌보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미혼모가 자신의 가족이나 정부 그리고 사회가 조정하는 대로 끌려가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작성한 한국의 아동권리보호 협약 이행 실태에 대한 제 2 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스스로 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미혼모들은 강한 비난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을 학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낙태나 입양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기르는 엄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한 달에 약 40 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미혼모는 “월 100 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구하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독신모들이 정규직을 갖는 것을 꺼리게 합니다.

IV. 대한민국에서 해외 입양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스스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외입양을 보내는 대신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가정위탁제도와 국내입양입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고, 그나마 가정위탁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한국 정부가 최근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국내입양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입양의 절차는 아직도 복잡하고,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해외입양기관에 의해서 좌절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현재 자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해외입양 보내는 대신 국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도덕적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태어난 국가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는 침해되며,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압을 받는 것 또한 어머니로서의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입양기관, 고아원, 미혼모 보호 시설 간에 어떠한 결탁 관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앞으로 진정한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려 한다면, 해외입양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답안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정부가 더 이상의 해외입양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 4. 25

국외입양인연대; 75서명, 일동